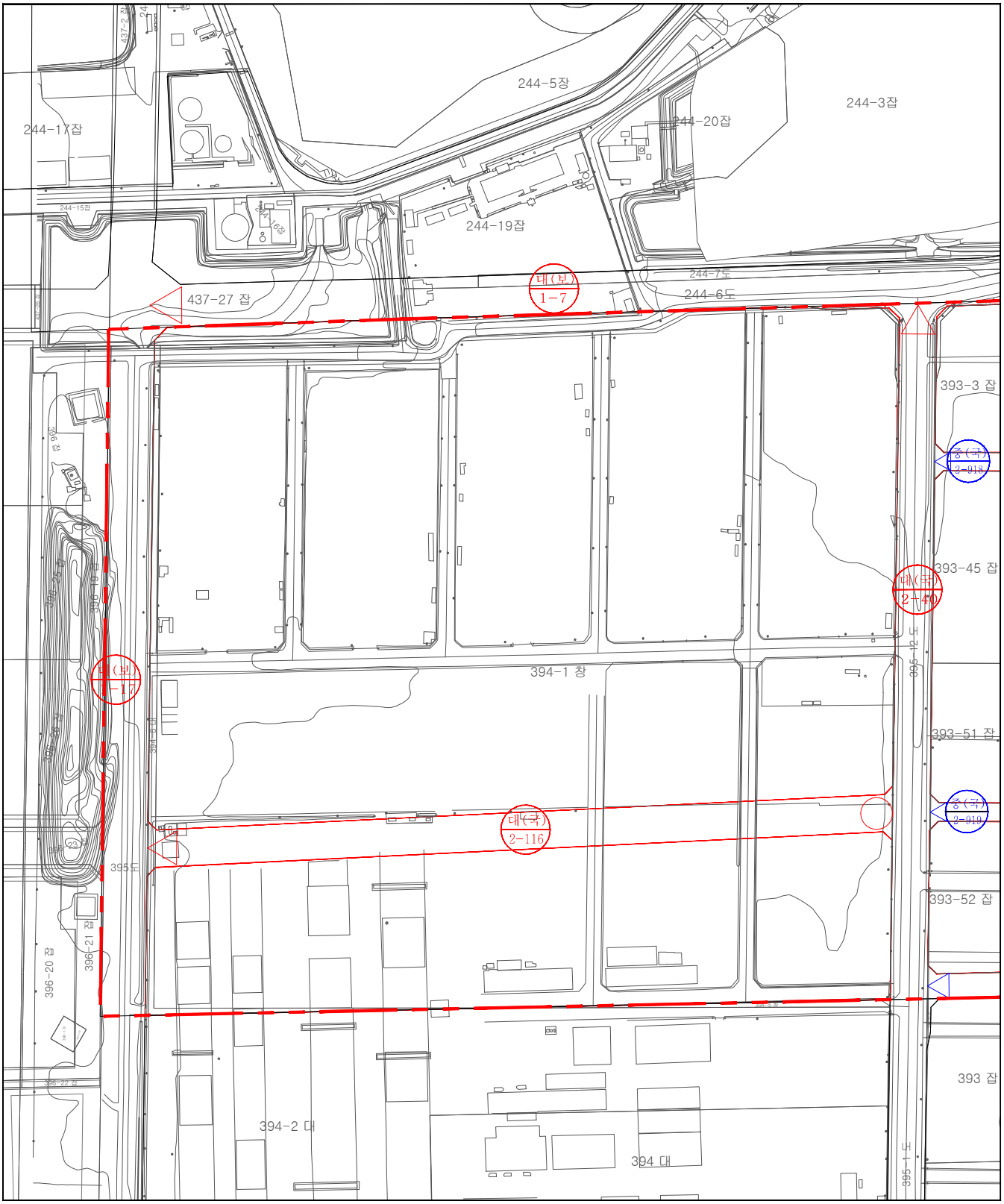

본 고시도는 변경부분에 한하여 유효 함.

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도

-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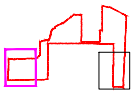

축 척 : 1 : 1,500

0 10 30 60m

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

도시계획도로

구 분	입안 및 결정권자	
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
소 속	도시계획과	도시계획과
직 위	-	도시정책담당
직 명	지방시설주사	지방시설사무관
성 명	조 기 동	이 경 웅
확인 (인)		

지 정 권 자	인천광역시장
지 정 일 자	2016년 11월 21일
고 시 년 도	2016년
고 시 번 호	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6-290호
작 성 자	인천광역시장
작 성 일 자	2016년 11월 21일
저작권소유 및 발 행 자	인천광역시장